

< 2026년 관세법령 개정사항 I - 교재순 >

구민회 관세사

- ★ 2026년 1월20일 전까지 개정된 법률(법·시행령·시행규칙 총정리)
 - 교재순으로 하였습니다. (기존 기본서를 보면서 개정사항 정리하세요)

- ★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시험전까지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 ★ 출제 가능성에 따른 중요도 표시
개정중요도를 ★/★★/★★★ 로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세요.

- ★ 개정의 성격을 표시함
 1. 개정내용이 신규법률이면 신설
 2. 개정내용의 내용의 변화이거나 명칭의 변화이면 변경
 3. 개정내용이 기존내용의 정리적 성격이면 정리
 4. 개정내용이 없어지는거면 삭제
 5. 개정내용이 하위법률에서 상위 법률로 우상향되었다면 승격

- ★ 개정된 부분은 굵은 글씨으로 표시함.

- ★ 이번 2026년 1차시험과 상관없는 법 개정은 제목을 파란색으로 표시함.

1. 구민회 관세법 - 과세편

● 관세법령 전체 ★★ - 타법 개정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1. 기획재정부령 --> 2. 기획재정부장관 --> 3. 기획재정부 --> 4. 통계청장 --> 5. 산업통상자원부 --> 6. 산업통산자원부장관 --> 7. 환경부 --> 8. 특허청 -->	1. 재정경제부령 2. 재정부경제장관 3. 재경경제부 4. 국가데이터처장 5. 산업통상부 6. 산업통상부장관 7. 기후에너지환경부 8. 지식재산처

● 교재 61페이지 ★★★ -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강화 (개정)

- 종전에는 구매대행업자가 관세등의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해야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관세등의 금액만 수령해도 연대납부책임을 부담함.

개정 전	개정 후
③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 (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 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a.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b.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③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 (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 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 -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a.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b.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 **교재 146~147페이지★ - 타법 개정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③ 수출자 약속제의</p> <p>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약속을 제의하거나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③ 수출자 약속제의</p> <p>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약속을 제의하거나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 **교재 153페이지★★★ - 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추가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① 우회덤핑행위</p> <p>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그 행위로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경미한 변경행위”라 한다)를 말한다.</p> <p>② 기재부령</p> <p>덤핑방지관세물품과 변경된 물품의 생산설비 등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p>	<p>① 우회덤핑행위</p> <p>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그 행위로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제3국에서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하는 행위 <p>② 재경부령</p> <p>상기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경미한 변경행위등”이라 한다)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p>

● **교재 153페이지★ - 표현 정리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p>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행위를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p>	<p>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역위원회가 경미한 변경행위등을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p>

● **교재 154페이지★★★ - 경미한 변경행위 등의 판단 추가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규칙 제20조2(경미한 변경행위의 판단)</p> <p>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과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우회덤핑(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 차이 2.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 3. 덤핑방지관세물품을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 및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용도 4.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설비 차이 5. 영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규칙 제20조의2(경미한 변경행위 등의 판단)</p> <p>①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과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우회덤핑(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 차이 2.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 3. 덤핑방지관세물품을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 및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용도 4.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설비 차이 5. 영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조립 또는 가공 공정

	<p>의 성격</p> <p>2. 제3국에서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된 제품(이하 이 조에서 “단순조립가공물품”이라 한다)의 가격 중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p> <p>3. 단순조립가공물품의 가격 중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p> <p>4. 제3국 내 단순조립가공물품 생산설비 등 투자금액 및 기간</p> <p>5.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이후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제3국 수출량</p> <p>6.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	--

● **교재 156~157페이지★★★ - 조사기간연장 및 부과기한 확대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p>(7) 우회덤핑 조사 절차 등</p> <p>③ 조사기간연장</p> <p>무역위원회는 상기 ②에 따른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⑤ 덤핑방지관세부과기한</p> <p>기획재정부장관은 상기 ②에 따라 조사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71조의5제3항(통보) 전단 및 영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9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p>	<p>(7) 우회덤핑 조사 절차 등</p> <p>③ 조사기간연장</p> <p>무역위원회는 상기 ②에 따른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⑤ 덤핑방지관세부과기한</p> <p>재정경제부장관은 상기 ②에 따라 조사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71조의5제3항(통보) 전단 및 영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9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0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p>

● **교재 157페이지★ - 표현 정리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p>(9)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p> <p>① 준용</p> <p>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에 관하여는 영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6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덤핑사실여부”는 “우회덤핑 여부”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9조제6항”은 “영 제71조의4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52조의 조사”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보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영 제59조제6항”은 “영 제71조의4제1항”으로, “제1항, 제8항 후단 및 영 제68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는 “제1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은 “의견”으로 보며, 같은 항 후단 중 “공청회 등이”는 “진술 또는 협의가”로 본다.</p>	<p>(9)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p> <p>① 준용</p> <p>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공급자”는 “공급자(제7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공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덤핑사실여부”는 “우회덤핑 여부”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9조제6항”은 “제71조의4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52조의 조사”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는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보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59조제6항”은 “제71조의4제1항”으로,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68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는 “제1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은 “의견”으로 보며, 같은 항 후단 중 “공청회 등이”는 “진술 또는 협의가”로 본다.</p>

● **교재 171페이지★ - 타법 개정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③ 수출자정부 및 수출자의 약속의 제의</p> <p>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약속을 제의하거나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③ 수출자정부 및 수출자의 약속의 제의</p> <p>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약속을 제의하거나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 **교재 251페이지★★★ - 가산세 감면사유 확대 (신설)**

-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만 면제

개정 전	개정 후
<p>2) ① 신고불성실가산세만 면제사유</p> <p>① 과세가격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p> <p>②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품목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p>	<p>2) ① 신고불성실가산세만 면제사유</p> <p>① 과세가격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p> <p>②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품목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p> <p>③ 제86조제2항(품목분류사전심사)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전심사 신청 물품 및 그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에 따른 기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에 따른 기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p> <p>㉠ 사전심사 신청일부턴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 전일까지</p> <p>㉡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턴 2개월이 되는 날까지</p>

● **교재 253페이지 - 타법 개정 (변경) - 2026년 7월1일 시행**

- 1차시험일자이후 시행되는 규정은 이번1차시험에 적용이 안됨.

개정 전	개정 후
<p>(4) 국세기본법 준용</p> <p>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한정한다)의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 나목·다목 및 제22조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의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법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같은 호 다목의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산세”로 본다.</p>	<p>(4) 국세기본법 준용</p> <p>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한정한다)의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 나목·라목 및 제22조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 중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및 “법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보고, 같은 호 라목의 “제47조의4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p>

	등 납부지연가산세” 및 “지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보며, 같은 법 제22조제4항제5호의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및 “지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본다.
--	--

● **교재 305페이지 - 오타 정정 (정정)**

개정 전	개정 후
<p>(2) 과다환급가산금</p> <p>세관장은 상기에 따라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천분의 35)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p>	<p>(2) 과다환급가산금</p> <p>세관장은 상기에 따라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천분의 31)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p>

● **교재 333페이지★★-중소기업이 아닌 자 세율불균형면세 확대 (변경)**

- 세율불균형 면세 규정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항공기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 면세적용기간을 2028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함

개정 전	개정 후
<p>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p> <p>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①②의 물품(항공기)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p> <p>㉠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p> <p>- 표 생략</p>	<p>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p> <p>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①②의 물품(항공기)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p> <p>㉠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p>

● **교재 335페이지★★★ - 지정공장 지정기간 연장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p>③ 지정기간</p> <p>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p>	<p>③ 지정기간</p> <p>지정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p>

● **교재 339페이지-장애인용품 면세대상확대(신설)-2026년 4월1일시행**

- 1차시험일자 이후 시행되는 규정은 이번1차시험에 적용이 안됨.

개정 전	개정 후
<p>(3) 장애인용품</p> <p>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p> <p>②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원·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p>	<p>(3) 장애인용품</p> <p>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p> <p>②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p> <p>③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원·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p>

● **교재 341페이지-특정물품 면세대상확대(신설)-2026년 4월1일시행**

- 1차시험일자 이후 시행되는 규정은 이번1차시험에 적용이 안됨.

개정 전	개정 후
<p>(18) 보석의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p> <p>- 상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가에 따른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 한다.</p>	<p>(18) 보석의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p> <p>- 상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가에 따른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 한다.</p> <p>(1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자원 중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p>

● **교재 378페이지★ - 중복조사금지 (정리)**

개정 전	개정 후
<p>(2) 중복조사금지</p> <p>세관공무원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p>	<p>(2) 중복조사금지</p> <p>세관공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받은 조사 대상</p> <p>[법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지 또는 교부된 조사 대상(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 통지된 경우에는 변경된 조사 대상)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p>

● **교재 379~380페이지★★★-관세조사사전통지기간합리화 (변경, 신설)**

- 사전통지기간을 20일로 연장함(재조사의 경우에는 7일)

개정 전	개정 후
<p>(1) 관세조사의 사전통지</p> <p>1) 의의</p> <p>세관공무원은 법 제110조 제2항 각각을 조사하기 위해 당해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기타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위임받은 자 포함)에게 조사개시 15일 전에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p> <p>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①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p> <p>②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p>	<p>(1) 관세조사의 사전통지</p> <p>1) 의의</p> <p>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에게 조사시작 20일[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 제1항제3호 후단(법 제131조제2호 전단과 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p> <p>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①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p> <p>②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공무원은 ②의 사유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는 날에 조사받을 자에게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세관공무원은 사전통지 또는 상기에 따라 교부한 사항을 변경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구민회 관세법 - 통관편

● 교재 12페이지 ★ - 명칭 변경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p>1)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p> <p>2)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 또는 반송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동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p> <p>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p> <p>②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 및 석궁</p>	<p>1)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p> <p>2)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 또는 반송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동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p> <p>① 법 제234조의2에 따른 마약류등</p> <p>②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 및 석궁</p>

● 교재 66페이지 ★★ - 타법 개정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p>(5) 특허의 요건</p> <p>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p> <p>①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p> <p>② 운영인의 결격사유(법 제175조)가 없을 것</p> <p>③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서 위험물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이하 “위험물품”이라 한다)을 장치·제조·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p> <p>④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화물의 보관·판매 및 관리에 필요한 자본금·수출입규모·구매수요·장치면적 및 시설·장비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것</p>	<p>(5) 특허의 요건</p> <p>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p> <p>①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p> <p>② 운영인의 결격사유(법 제175조)가 없을 것</p> <p>③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서 위험물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이하 “위험물품”이라 한다)을 장치·제조·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p> <p>④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화물의 보관·판매 및 관리에 필요한 자본금·수출입규모·구매수요·장치면적 및 시설·장비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것</p>

● **교재 80페이지 ★★★ - 보세공장의 작업완료 결과통보기한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p>⑤ 결과 통보</p> <p>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상기 ③ 또는 ④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p>	<p>⑤ 결과 통보</p> <p>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상기 ③ 또는 ④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p>

● **교재 81페이지 ★ - 제품과세 정리 (정리)**

개정 전	개정 후
<p>(1) 제품과세</p> <p>② 내외국품 혼용승인에 의한 비례과세</p> <p>④ 외국물품 의제</p>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으로 본다.</p>	<p>(1) 제품과세</p> <p>② 내외국품 혼용승인에 의한 비례과세</p> <p>④ 외국물품 의제</p> <p>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으로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p>

● **교재 81페이지 ★★ - 원료과세 신청시기 변경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p>(2) 원료과세</p> <p>① 의의</p> <p>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p>	<p>(2) 원료과세</p> <p>① 의의</p> <p>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p>

● **교재 91페이지 ★★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 (변경)**

1. **개정 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특허수수료율

해당 연도 매출액	특허수수료율
2천억원 이하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2천억원 초과 1조원이하	2억원 +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1조원 초과	42억원 + (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

2. **개정 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특허수수료율

해당 연도 매출액	특허수수료율
2천억원 이하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5
2천억원 초과 1조원이하	1억원 +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25)
1조원 초과	21억원 + (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 **교재 141페이지 ★★ - 타법 개정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p>(1) 보세운송신고 및 승인</p> <p>외국물품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p>	<p>(1) 보세운송신고 및 승인</p> <p>외국물품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p>

● **교재 143페이지 ★ - 보세 운송수단의 제한 고시규정편입 (정리)**

개정 전	개정 후
<p>(3) 운송수단의 제한</p> <p>보세운송을 하려는 자가 운송수단을 정하여 제 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p>	<p>(3) 운송수단의 제한</p> <p>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보세운송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p>

● **교재 164페이지 ★ - 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정리)**

개정 전	개정 후
<p>2. 마약류등의 수출입 제한(법 제234조의2)</p> <p>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료 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p>	<p>2. 마약류등의 수출입 제한(법 제234조의2)</p> <p>「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p>

● **교재 169페이지 - 탁송품 상표권보호절차간소화(신설)-2026년4월1일시행**

- 1차시험일자 이후 시행되는 규정은 이번1차시험에 적용이 안됨.

-

개정 전	개정 후
<p>(2) 수출입 신고사실 통보</p> <p>내용 생략</p> <p>(2)-1 탁송품등의 상표권보호절차 간소화</p>	<p>(2)-1 탁송품등의 상표권보호절차 간소화</p> <p>세관장은 상기(2) 물품이 다음 아래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5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허용 및 유치·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p> <p>① 법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인 경우</p>

● **교재 220페이지 ★★ - 탁송품 배송지 정보제출 강화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4. 탁송품 배송지에 대한 정보의 제출</p> <p>탁송품 운송업자는 상기에 따라 제출한 통관목록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수입신고를 한 탁송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우편법」 제3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4. 탁송품 배송지에 대한 정보의 제출</p> <p>탁송품 운송업자는 상기에 따라 제출한 통관목록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수입신고를 한 탁송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는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세관장에게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 **교재 263페이지 ★★★ - 불법물품 등에 대한 정보 추가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10)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p> <p>① 의의</p> <p>관세청장은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의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㉔ 관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성분·표시·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에 관한 정보</p> <p>㉕ 상기의 물품을 제조, 거래,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p>	<p>(10)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p> <p>① 의의</p> <p>관세청장은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의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㉔ 관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성분·표시·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에 관한 정보</p> <p>㉕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성분·표시·품질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한 물품에 관한 정보</p> <p>㉖ 상기 ㉔㉕의 물품을 제조, 거래,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p>

● **교재 264페이지 ★ - 마약류등 명칭 개정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p>(11)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p> <p>① 의의</p> <p>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 마약류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p> <p>㉡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p> <p>㉢ 마약류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p>	<p>(11)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p> <p>① 의의</p> <p>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 마약류등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p> <p>㉡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p> <p>㉢ 마약류등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p>

● **교재 265페이지 ★★ - 검사방법 등의 구체화 (정리,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1. 물품, 운수기관, 장치장소, 장부서류의 검사 등 (법 제265조)</p> <p>세관공무원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수기관, 장치장소 및 관계 장부 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물품, 운수기관, 장치장소, 장부서류의 검사 등 (법 제265조)</p> <p>(1) 의의</p> <p>세관공무원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수기관, 장치장소 및 관계 장부 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2) 여행자 등 검색</p> <p>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승무원 및 그 밖에 입국하는 자(이하 “여행자등”이라 한다)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p> <p>① 법 제137조의2제1항(승객예약자료의요청) 각 호의 검사업무</p>

	<p>② 법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여행자유치예치)의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p> <p>(3) 신체검색</p> <p>세관공무원은 상기(2)에 따라 검색한 결과 여행자 등이 다음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p> <p>① 마약류등</p> <p>②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p> <p>③ 그 밖에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p> <p>(4) 여성 신체검색</p> <p>여성에 대하여 상기에 따른 신체 검색을 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이 하여야 한다.</p>
--	---

● **교재 268페이지 ★ - 마약류등 명칭 개정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p>5. 위치정보의 수집</p> <p>(1) 의의</p> <p>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제241조제1항(일반신고) 및 제2항(간이신고)을 위반하여 수입하는 마약류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p>	<p>5. 위치정보의 수집</p> <p>(1) 의의</p> <p>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제241조제1항(일반신고) 및 제2항(간이신고)을 위반하여 수입하는 마약류등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p>

● **교재 327페이지 ★ - 타법 명칭 개정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p>2. 대상 기관</p> <p>(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p>	<p>2. 대상 기관</p> <p>(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p>